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 . .<br>(제 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구윤철<br>(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

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

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63조제2항)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안 제63조제5항·제6항)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

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  
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  
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  
를 추가함.

차.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  
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  
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4. ~ 8.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  
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9항 중 “증여세·가산금”을 각각 “증여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41조의5”를 “제41조의5,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를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마.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2. 별표의 업종 및 그 밖에 제1호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이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년”을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5년간”을 각각 “10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로, “제5항 각 호”를 “제6항 각 호”로,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로,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로 하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를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및 제97조의2제4항”으로, “양도소득세가”를 “소득세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 공제한도             |
|---------------|------------------|
| 20년 이상 50년 미만 | 경영 연수(年數) × 20억원 |
| 50년 이상        | 1,000억원          |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기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기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⑬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제39조의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는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함으로써”로 보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신주”는 “자기주식등”으로, “발행”은 “처분”으로,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실권주”는 “취득을 포기하여 미배정된 자

기주식등”으로, “인수”는 “취득”으로 본다.

제39조의2의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은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은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으로, “소각함으로써”는 “취득함으로써”로,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은 “대금지급일”로, “소각한 경우”는 “취득한 경우”로,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은 “취득 대상 자기주식등의 주주등”으로 본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보유비율”을 “주식등 보유비율”로, “주주에”를 “주주 또는 출자자에”로 한다.

제46조제5호 중 “생활비,”를 “생활비 및”으로 한다.

제48조제8항 본문 중 “이사는”을 “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은”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63조제2항”을 “제63조제2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상자산의”를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호”를 “조”로, “한다)”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아니한다)”를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를 “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 및 제60조제2항”로, “항에서”를 “조에서”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을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⑤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25퍼

센트(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경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  
을 가산한 가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  
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  
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  
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  
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  
하여 5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  
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  
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 6  
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  
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  
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  
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일 것

-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⑥ 제5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일, 주가순자산비율 순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기의 기간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업종 구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제5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제2항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72조의2제3항제3호가목 중 “5년”을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제18조의2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제78조제12항 전단 중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을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82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82조제8항 중 “투자조합은”을 “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로, “거래하는 경우에는”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

를 취급하는 자가”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금융재산 일괄 조회)”를 “(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으로, “장은”을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장에게”를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8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가상자산사업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제11항은 제외한다), 제72조의2 및 별표의 개정규정: 2027년 7월 1일

2. 제35조제3항, 제60조제1항제1호, 제63조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027년 4월 1일

3. 제78조제12항 전단·제13항 전단 및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

제2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1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기주식등 처분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기주식등 취득에 따른 이익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의 직원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의 원칙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해외 상장 추진중인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전단 및 제1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금융재산 일괄 조 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일괄 조 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질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질문 또는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별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제18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          |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
| 대분류               | 업종코드  |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A) | 01123 | 종자 및 묘목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br>[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나. 광업(B)          | 05100 | 석탄 광업                                                                                                                                                                                                                   |
|                   | 06100 | 철 광업                                                                                                                                                                                                                    |
|                   | 06200 | 비철금속 광업                                                                                                                                                                                                                 |
|                   | 07110 | 석회석 및 점토 광업                                                                                                                                                                                                             |
|                   | 07121 |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
|                   | 07210 |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
|                   | 07290 |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
|                   | 08000 | 광업 지원 서비스업                                                                                                                                                                                                              |
| 다. 제조업(C)         | 10111 |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
|                   | 10112 | 가금류 도축업                                                                                                                                                                                                                 |
|                   | 10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122 |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                   | 10129 |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가공업 (가금류 제외)                                                                                                                                                                                              |
|                   | 10211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                   | 10212 |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
|                   |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10219 |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301 | 김치류 제조업                                                                                                                                                                                                                 |
|                   | 10302 |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
|                   | 10309 |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1041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                   | 1041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                   | 10413 |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                   | 10421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10422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
|                   | 10511 | 곡물 도정업                                                                                                                                                                                                                  |

|  |       |                      |
|--|-------|----------------------|
|  | 10512 | 곡물 제분업               |
|  | 10513 |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  | 10519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
|  | 105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 10601 | 떡류 제조업               |
|  | 10602 | 빵류 제조업               |
|  | 10603 |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
|  | 10701 | 도시락류 제조업             |
|  | 10709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
|  | 10810 | 설탕 제조업               |
|  | 10820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  | 10831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  | 10832 |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10833 | 장류 제조업               |
|  | 1083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10891 | 커피 가공업               |
|  | 10892 | 차류 가공업               |
|  | 10893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  | 108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10895 | 인삼식품 제조업             |
|  | 10896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 10897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108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10901 |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         |
|  | 10902 | 배합 사료 제조업            |
|  | 10903 | 단미 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
|  | 11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  | 11112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  | 11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 11121 | 주정 제조업               |
|  | 11122 | 소주 제조업               |
|  | 11129 |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 11201 | 얼음 제조업               |
|  | 11202 | 생수 생산업               |
|  |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  | 13101 | 면 방적업                |
|  | 13102 | 모 방적업                |
|  |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  | 13109 | 기타 방적업               |
|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  | 13212 | 모직물 직조업              |

|  |       |                       |
|--|-------|-----------------------|
|  | 13213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  | 13219 | 특수 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13222 |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
|  |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13224 |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13225 | 직물포대 제조업              |
|  |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  | 13300 | 편조원단 제조업              |
|  | 13401 | 솜 및 실 염색가공업           |
|  | 13402 |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
|  | 13403 | 날염 가공업                |
|  | 13409 |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13910 |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13921 | 끈 및 로프 제조업            |
|  | 13922 |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
|  | 13991 | 세폭직물 제조업              |
|  |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  |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  | 13994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14111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  | 14112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  | 14120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  | 14130 | 한복 제조업                |
|  | 14191 |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
|  | 14192 |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
|  | 14193 | 가죽의복 제조업              |
|  | 14194 | 유아용 의복 제조업            |
|  | 14199 |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  | 14200 | 모피제품 제조업              |
|  | 14300 | 편조의복 제조업              |
|  | 14411 |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
|  | 14419 |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14491 | 모자 제조업                |
|  | 14499 | 그 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
|  | 15110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  | 15121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  | 15129 |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
|  | 15190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  | 15211 | 구두류 제조업               |
|  | 15219 | 기타 신발 제조업             |

|       |                           |
|-------|---------------------------|
| 15220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 16101 | 일반 제재업                    |
| 16102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 16103 |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
| 16211 |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
| 1621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 16221 |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1622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16231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
| 16232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 16291 |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
| 16292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 16299 |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16300 |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 17101 | 펄프 제조업                    |
| 17102 | 신문용지 제조업                  |
| 17103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 17104 | 골판지 원지 제조업                |
| 17105 | 크라프트지 및 기타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17106 | 위생용 원지 제조업                |
| 1710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17211 | 골판지 제조업                   |
| 17212 |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
| 17221 |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17222 |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 17223 |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 17229 |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
| 17901 |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 17902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 17903 |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 17904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 17909 |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 18111 | 경 인쇄업                     |
| 18112 | 스크린 인쇄업                   |
| 18113 | 오프셋 인쇄업                   |
| 18119 | 기타 인쇄업                    |
| 18121 | 제판 및 조판업                  |
| 18122 | 제책업                       |
| 18129 | 기타 인쇄관련 산업                |
| 18200 | 기록매체 복제업                  |
| 19100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
| 19210 | 원유 정제처리업                  |

|  |       |                               |
|--|-------|-------------------------------|
|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 19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 20112 |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 20119 |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
|  | 20121 | 수소 제조업                        |
|  | 20122 |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
|  | 20129 |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
|  | 20131 |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20132 | 염료, 조제 무기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 20311 |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 20321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 20322 |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12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0413 |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20422 |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
|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  | 20424 |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
|  | 20491 |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
|  |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20494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 20495 |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
|  | 204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  | 21100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  | 21211 | 생물 의약품 제조업                    |
|  | 21212 | 합성의약품 및 기타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21220 | 한의원약품 제조업                     |
|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21301 | 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                  |

|  |       |                                          |
|--|-------|------------------------------------------|
|  | 21309 | 그 외 기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br>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
|  | 22110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 22191 | 고무패킹류 제조업                                |
|  | 22192 |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 22193 |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
|  | 22199 |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 22211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  |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  | 22214 |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 22221 |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23 |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
|  | 22229 |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
|  | 22231 |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22232 |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22249 |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2251 |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22259 |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
|  | 22291 |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
|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23111 | 판유리 제조업                                  |
|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  | 23119 |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
|  | 23121 |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  | 23122 |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
|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3191 |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
|  | 23192 |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  | 23199 |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  | 23211 |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3212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 23221 |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
|  | 23222 |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 23229 |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

|       |                             |
|-------|-----------------------------|
| 23231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23232 |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23239 |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 23311 | 시멘트 제조업                     |
| 23312 |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
| 23321 |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
| 23322 | 레미콘 제조업                     |
| 23323 |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
| 23324 |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
| 23325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 23326 |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
| 23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3911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23919 | 기타 석제품 제조업                  |
| 23991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
| 23992 | 연마재 제조업                     |
| 23993 |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
| 23994 |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24111 | 제철업                         |
| 24112 | 제강업                         |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 24132 | 강관 제조업                      |
| 24133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     |
| 24199 |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
| 24211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2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3 |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19 |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4229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업  |

|  |       |                           |
|--|-------|---------------------------|
|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  | 25111 |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25112 |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
|  | 25113 |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4 |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  |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  | 25121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  | 25123 |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  | 25130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
|  | 2520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  |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  | 25922 | 도금업                       |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
|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  | 25931 | 날붙이 제조업                   |
|  | 25932 | 일반철물 제조업                  |
|  | 25933 |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
|  | 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  |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  | 25942 | 그 외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
|  | 25943 | 금속 스프링 제조업                |
|  | 25944 |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
|  | 25991 |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 25992 |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
|  | 25993 |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
|  | 25994 | 금속 표시판 제조업                |
|  | 25995 |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
|  | 25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
|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12 |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26121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       |                           |
|--|-------|---------------------------|
|  |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2 |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6223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  | 26292 |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
|  | 26293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  | 26294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  | 26322 |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  | 26323 |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  | 26519 |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 26521 |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
|  | 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 2660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  | 27111 |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
|  | 27191 | 치과용 기기 제조업                |
|  | 27192 | 치과기공물 제조업                 |
|  | 27193 |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업              |
|  | 27194 |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5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  | 27196 | 의료용 가구 제조업                |
|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27211 |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 27212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213 |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       |                              |
|--|-------|------------------------------|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  | 27220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  |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 27309 |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
|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 28112 | 변압기 제조업                      |
|  | 28113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
|  | 28122 |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
|  | 28123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
|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  | 28202 |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  | 28209 |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 28303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
|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8422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  | 28429 |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
|  | 28511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  | 28512 |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
|  |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 28520 |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
|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  | 28902 |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
|  | 28903 |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  | 29132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 29150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  | 29161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  | 29162 | 승강기 제조업                      |

|  |       |                               |
|--|-------|-------------------------------|
|  | 29163 |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
|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  | 29171 |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
|  | 29172 |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29173 |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  | 29174 |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  | 29175 | 기체 여과기 제조업                    |
|  | 29176 |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 29177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29191 |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
|  | 29192 |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
|  | 29193 |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
|  | 29199 |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29210 |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
|  | 29221 |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
|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23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 29229 |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
|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  | 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  | 29242 |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
|  | 29250 |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
|  | 29261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72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 29291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 29292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  | 29293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 30121 |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 30122 |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  | 30123 |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       |                             |
|--|-------|-----------------------------|
|  | 30124 |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
|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 3040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 31111 | 강선 건조업                      |
|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 31120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 31201 |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 31311 |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 31921 | 모터사이클 제조업                   |
|  | 31922 |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제조업            |
|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 32011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  | 32019 |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
|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  | 32029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  | 32091 | 금속 가구 제조업                   |
|  | 32099 |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
|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  | 33201 | 건반 악기 제조업                   |
|  | 33209 | 기타 악기 및 전자 악기 제조업           |

|                                   |       |                          |
|-----------------------------------|-------|--------------------------|
|                                   | 33301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                                   | 33302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 33401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 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
|                                   | 3391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 33931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33932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                                   | 33933 | 표구처리업                    |
|                                   | 33991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 33992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
|                                   | 33993 | 비 및 솔 제조업                |
|                                   | 33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                                   | 34011 |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34019 |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34020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
| 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br>조절 공급업(D)   | 35112 | 수력 발전업                   |
|                                   | 35114 | 태양력 발전업                  |
|                                   | 35115 | 풍력 발전업                   |
|                                   | 35119 | 기타 발전업                   |
| 마.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br>리, 원료 재생업(E) | 37011 | 하수 처리업                   |
|                                   | 37012 | 폐수 처리업                   |
|                                   | 37022 | 축산 분뇨 처리업                |
|                                   | 38110 |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 38120 |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
|                                   | 38210 |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
|                                   | 38220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                                   | 38230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                                   | 38240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
|                                   | 38311 | 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                                   | 38312 | 금속류 원료 재생업               |
|                                   | 38321 |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
|                                   | 38322 |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
| 바. 건설업(F)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                                   | 41121 | 사무·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
|                                   | 41122 | 제조업 및 유사 산업용 건물 건설업      |
|                                   | 41129 | 기타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                                   | 41210 | 지반조성 건설업                 |
|                                   | 41221 | 도로 건설업                   |

|                |       |                              |
|----------------|-------|------------------------------|
|                | 41222 | 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
|                | 41223 | 항만, 수로, 댐 및 유사 구조물 건설업       |
|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                | 41225 | 산업생산시설 종합건설업                 |
|                | 41226 | 조경 건설업                       |
|                | 41229 | 기타 토목시설물 건설업                 |
|                | 42201 |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                | 42202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                | 42203 |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
|                | 42204 |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
|                | 42205 | 소방시설 공사업                     |
| 사. 도매 및 소매업(G) | 42209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
|                | 45211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                | 45212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                | 45213 | 자동차 내장용 신품 전기·전자·정밀 기기 판매업   |
|                | 45219 |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                | 46101 |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
|                | 46102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                | 46103 |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
|                | 46104 |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
|                | 46105 |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
|                | 46106 | 기계 및 장비 중개업                  |
|                | 46107 | 그 외 기타 특정 상품 중개업             |
|                | 46109 | 상품 종합 중개업                    |
|                | 46311 | 과실류 도매업                      |
|                | 46312 |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                | 46313 | 육류 도매업                       |
|                | 46314 | 건어물 및 젓갈류 도매업                |
|                | 46315 |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
|                | 46319 |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                | 46321 |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
|                | 46322 |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                | 46323 |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46324 | 낙농품 및 동·식물성 유지 도매업           |
|                | 46325 | 커피 및 차류 도매업                  |
|                | 46326 | 조미료 도매업                      |
|                | 46329 |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
|                | 46332 | 비알코올음료 도매업                   |
|                | 46413 |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
|                | 46414 | 유아용 의류 도매업                   |

|       |                        |
|-------|------------------------|
| 46415 | 속옷 및 잠옷 도매업            |
| 46416 |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
| 46417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도매업   |
| 46420 | 신발 도매업                 |
| 46462 | 악기 도매업                 |
| 46491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
| 46510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 46521 |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
| 46522 |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
| 46531 |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46532 |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46533 |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46539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46591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
| 46592 | 의료기기 도매업               |
| 46593 | 정밀기기 및 과학기기 도매업        |
| 46594 |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
| 46595 |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 46596 | 전지 및 케이블 도매업           |
| 46599 |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
| 46621 |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
| 46622 | 철물, 금속 파스너 및 수공구 도매업   |
| 46711 |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46712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46713 |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46721 | 1차 금속제품 도매업            |
| 46722 | 금속광물 도매업               |
| 46731 | 염료, 안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 46732 | 비료 및 농약 도매업            |
| 46733 | 플라스틱물질 및 합성고무 도매업      |
| 46739 |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
| 46741 | 방직용 섬유 및 실 도매업         |
| 46742 | 직물 도매업                 |
| 46750 | 종이 원지, 판지, 종이상자 도매업    |
| 46791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 46799 |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
| 46800 | 상품 종합 도매업              |
| 47411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 47412 | 여자용 겉옷 소매업             |
| 47413 | 속옷 및 잠옷 소매업            |
| 47414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 47415 | 한복 소매업                 |

|                 |       |                         |
|-----------------|-------|-------------------------|
|                 | 47416 | 가죽 및 모피의복 소매업           |
|                 | 47417 | 유아용 의류 소매업              |
|                 | 47419 | 기타 의복 소매업               |
|                 | 47421 | 가정용 식물제품 소매업            |
|                 | 47422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                 | 47429 |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
|                 | 47430 | 신발 소매업                  |
|                 | 47440 |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
|                 | 47911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                 | 47912 | 전자상거래 소매업               |
|                 | 47919 | 기타 통신 판매업               |
|                 | 47920 |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
|                 | 47991 | 자동판매기 운영업               |
|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                 | 47993 | 방문 판매업                  |
|                 | 47999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아. 운수 및 창고업(H)  | 50111 | 외항 여객 운송업               |
|                 | 50112 | 외항 화물 운송업               |
|                 | 50121 | 내항 여객 운송업               |
|                 | 50122 | 내항 화물 운송업               |
|                 | 50130 | 기타 해상 운송업               |
|                 | 52921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                 | 52922 | 선박관리업                   |
|                 | 52929 | 기타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52942 | 수상 화물 취급업               |
|                 | 5299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자. 숙박 및 음식점업(I) | 56111 | 한식 일반 음식점업              |
|                 | 56112 | 한식 면요리 전문점              |
|                 | 56113 |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
|                 | 56114 |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
|                 | 56121 | 중식 음식점업                 |
|                 | 56122 | 일식 음식점업                 |
|                 | 56123 | 서양식 음식점업                |
|                 | 56129 |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
|                 | 56130 | 기관 구내식당업                |
|                 | 56141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                 | 56142 | 이동 음식점업                 |
|                 | 56150 | 제과점업                    |
|                 | 56161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                 | 56162 | 치킨 전문점                  |
|                 | 56191 |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
|                 | 56199 |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

|                    |                                                                                |                              |
|--------------------|--------------------------------------------------------------------------------|------------------------------|
|                    | * 한식 일반 음식점업(56111)부터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6199)의 경우 음식을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차. 정보통신업(J)        | 58111                                                                          |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
|                    | 58112                                                                          | 만화 출판업                       |
|                    | 58113                                                                          | 일반 서적 출판업                    |
|                    | 58190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12                                                                          |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59111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2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3                                                                          |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                    | 59114                                                                          |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                    | 5912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
|                    | 5920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 59202                                                                          | 녹음시설 운영업                     |
|                    | 60100                                                                          | 라디오 방송업                      |
|                    | 60221                                                                          | 프로그램 공급업                     |
|                    | 60222                                                                          | 유선 방송업                       |
|                    | 60229                                                                          | 위성 및 기타 방송업                  |
|                    | 60310                                                                          | 영상물 제공 서비스업                  |
|                    | 60320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                    | 61210                                                                          | 유선 통신업                       |
|                    | 61220                                                                          | 무선 및 위성 통신업                  |
|                    | 61291                                                                          | 통신 재판매업                      |
|                    | 61299                                                                          |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
|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 62022                                                                          | 컴퓨터시설 관리업                    |
|                    | 62090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
|                    | 63111                                                                          | 자료 처리업                       |
|                    | 63112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                    | 63910                                                                          | 뉴스 제공업                       |
|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
|                    | 63999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                            |
|--------------------------------|-------|----------------------------|
| 스업(M)                          | 70112 |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 70130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
|                                | 70201 |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
|                                | 70209 |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 71310 | 광고 대행업                     |
|                                | 71391 | 옥외 광고업                     |
|                                | 71392 |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                                | 71399 |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
|                                | 72111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                                | 72112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                                | 72121 |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122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 72911 |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 72919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                                | 72921 | 측량업                        |
|                                | 72922 | 제도업                        |
|                                | 72923 | 지질 조사·탐사 및 지도 제작업          |
|                                | 73201 | 인테리어 디자인업                  |
|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 73209 |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타.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 7410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 74211 | 건축물 일반 청소업                 |
|                                | 74212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                                | 74220 |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
|                                | 75122 |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
|                                | 75210 | 여행사업                       |
|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 75992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 파. 교육 서비스업(P)                  | 85110 | 유아 교육기관                    |
|                                | 85650 | 직원훈련기관                     |
|                                | 85669 |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 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 87111 |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
|                                | 87112 |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
|                                | 87121 |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 87122 |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 |

|                                |       |                      |
|--------------------------------|-------|----------------------|
|                                |       | 설 운영업                |
|                                | 87131 |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 87139 |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
|                                | 87210 | 보육시설 운영업             |
|                                | 87291 | 직업재활원 운영업            |
|                                | 87292 | 종합복지관 운영업            |
|                                | 87293 |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
|                                | 87294 |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
|                                | 87299 |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
|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 90121 | 연극단체                 |
|                                | 90191 | 공연 기획업               |
|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 95211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                                | 95212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                                | 95220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비고: 위 표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⑧ (생략)                                                                                                                                                                                         |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 ⑧ (현행과 같음)                                                                                                                       |   |   |
|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u>증여세 · 가산금</u>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u>증여세 · 가산금</u>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⑨ -----<br>--- <u>증여세</u> -----<br>-----<br>-----<br>-----<br>-----<br>-----<br>-----<br>-----<br>-----<br>-----<br>----- <u>증여세</u> -----<br>-----. |   |   |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br>-----<br>-----.                                                                                                          |   |   |
| 1. ~ 5. (생략)                                                                                                                                                                                                       |   | 1. ~ 5. (현행과 같음)                                                                                                                                     |   |   |
|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u>제41조의5</u> , 제60조, 제63조, 제                                                                                                    |   | 6. -----<br>-----<br>-----<br>-----<br><u>제41조의5, 제45조의3</u> -----                                                                                   |   |   |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  
 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  
 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  
 00억원

-----  
 -----  
 -----  
 -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  
 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  
 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  
 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  
 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후  
 단 삭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  
 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서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  
 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  
 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  
 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                                                                                          |                                                                                                                                                                                                                                                                                                                                                                                                                                                                                     |
|------------------------------------------------------------------------------------------|-------------------------------------------------------------------------------------------------------------------------------------------------------------------------------------------------------------------------------------------------------------------------------------------------------------------------------------------------------------------------------------------------------------------------------------------------------------------------------------|
| <p>2. <u>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u></p> <p>3. <u>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u></p> | <p><u>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u></p> <p>다. 「<u>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u></p> <p>라.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u></p> <p>마. 「<u>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u></p> <p>바. 그 밖에 <u>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u></p> <p>2. <u>별표의 업종 및 그 밖에 제1호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이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u></p> <p>3.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u></p> |
|------------------------------------------------------------------------------------------|-------------------------------------------------------------------------------------------------------------------------------------------------------------------------------------------------------------------------------------------------------------------------------------------------------------------------------------------------------------------------------------------------------------------------------------------------------------------------------------|

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신 설>

② (생 략)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

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피상속인의<br>경영기간    | 공제한도                 |
|------------------|----------------------|
| 20년 이상 50년<br>미만 | 경영 연수(年數) × 2<br>0억원 |
| 50년 이상           | 1,000억원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 3. (생략)

-----  
-----  
-----  
-----  
-----  
-----  
-----  
-----.

⑥ -----  
-----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  
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  
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  
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  
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  
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  
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  
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생략)

4. -----  
--

가. ----- 10년간 --  
-----  
-----  
-----  
-----  
-----  
-----  
-----  
-----  
-----  
-----

나. ----- 10년간 --  
-----  
-----  
-----  
-----  
-----  
-----  
-----  
-----  
-----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생략)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

⑧ 제6항-----  
-----  
-----  
-----  
-----  
-----.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  
----- 제6항  
각 호-----  
----- 제  
9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  
-----  
-----  
-----  
-----  
-----  
----- 제6항 또는 제9항제  
2호-----  
-----  
-----.

⑪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소득

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신 설>

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및 제97조의2제4항----- 소득세가 -----  
----- 소  
득세 상당액-----  
-----.  
-----.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신 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생략)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4.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⑬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현행과 같음)

[illegible]

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생 략)

<신 설>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자기주식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는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함으로써”로 보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생략)  
<신설>

“신주”는 “자기주식등”으로, “발행”은 “처분”으로,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등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실권주”는 “취득을 포기하여 미배정된 자기주식등”으로, “인수”는 “취득”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

제39조의2(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은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으로, “소각함으로써”는 “취득함으로써”로,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은 “대금지급일”로, “소각한 경우”는 “취득한 경우”로,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은 “취득 대상 자기주식등의 주주등”으로 본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 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 주주 또는 출자  
자에 -----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⑤ (생략)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 10. (생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 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

-----  
-----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생활비 및 -----  
-----  
-----

6. ~ 10.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 ⑭ (생략)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

-----  
-----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은 ----. -----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 ⑦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  
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  
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  
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  
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  
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  
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10억원-----.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  
-----  
-----  
-----  
-----.  
-----  
-----  
-----.

1. -----  
-----  
-----  
-----  
-----  
-----제63조  
제2항 · 제5항-----  
-----  
-----  
-----

2. -----  
-----  
--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  
이라 한다)의 -----

평가한 가액

② ~ ⑤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  
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  
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  
에서 “상장주식”이라 한  
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  
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  
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  
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  
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  
은 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  
-----  
-----.

1. -----

가. -----  
-----  
-----  
-----  
----- 조-  
-----  
-----  
-----  
-----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  
-----  
-----



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 3. (생략)

<신설>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③ 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 및 제60조제2항-----

----- 조에  
선 -----

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신설>

-----  
-----  
-----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동안 업종

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  
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25퍼센트(코스닥시장에  
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경우 1  
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제  
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  
을 가산한 가액, 제1항제1호가  
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  
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  
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  
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  
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  
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  
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  
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 6개월간의 거래  
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  
춘 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주  
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  
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  
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  
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  
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  
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

장 큰 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  
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기  
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행위가 있을 것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일 것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  
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  
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  
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  
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  
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신 설>

<신 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생 략)  
②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  
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  
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⑥ 제5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  
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  
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의 산  
정일, 주가순자산비율 순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기의 기간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업종 구분, 평가기준  
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  
이 제5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상자산-----  
-----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생략)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2. (생략)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  
-----.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가. ----- 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  
액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  
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  
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생략)

④ ~ ⑦ (생략)

<신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  
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나. ----- 10년 -----

4. 제18조의2제6항제4호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  
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⑨ ----- 제8항 -----

\_\_\_\_\_

\_\_\_\_\_

\_\_\_\_\_

\_\_\_\_\_

제78조(가산세 등)

③ ~ ⑪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⑬ -----  
-----  
-----  
----- 제 82 조 제 3 항 · 제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  
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  
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  
산세는 징수한다.

⑭ · ⑮ (생략)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생략)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  
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  
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  
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  
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생략)  
<신설>

4항 · 제7항 및 제8항-----

-----

-----.

-----

-----.

⑭ · ⑮ (현행과 같음)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투자조

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

----- 거래하는 경우

에는 「민법」에 따른 업무집행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

-----.

제83조(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장은 세무서장등이 제

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

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

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상자

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4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를」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  
-----.

④ ----- 제1항 또는 제2항  
----- 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  
-----.

1. ~ 3. (현행과 같음)

제84조(질문·조사) -----  
-----  
-----  
-----  
-----  
-----  
-----  
-----.

|                                                                                                                                      |                                                                                                                    |
|--------------------------------------------------------------------------------------------------------------------------------------|--------------------------------------------------------------------------------------------------------------------|
| <p>질문 · 조사하거나 장부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가상자산사업자</u></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
|-------------|------------------|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
| 연 락 처       | (044) 215 - 4311 |